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37
----------	---------

제출일자	2003. 9.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 이유

- 조직의 미래 지향적 행정 환경에 대응성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기능쇠
퇴,보강분야에 대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조직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
- 불합리한 보건진료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주변환경의 여건변
화로 일부 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실.과 통·폐합 및 설치 : 12실과단 ⇒ 12실과
 - 통·폐합 : 산림과와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 ⇒환경녹지과
 - 설 치 : 도시환경과의 도시분야⇒지역개발과
- 실과 사업소 명칭변경
 - 문화공보실 ⇒ 문화관광과
 - 산업과 ⇒ 농정과
 - 주민자치지원단 ⇒ 자치지원과
 -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 농업지원과
 - 자치행정과 ⇒ 행정과
 - 지역경제과 ⇒ 경제과
 - 문화복지센터 ⇒ 문화센터
 - 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 신설로 인한 업무 분장
 - 자치행정과 - 대외협력업무
 - 지역개발과 -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 미래산업 업무
 - 골프장개발업무
- 업무이관
 - 종합민원실 120기동대 업무 ⇒ 자치지원과
 -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거창사건담당 업무 ⇒ 자치지원과,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 도시환경과 관광온천담당 업무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업무 ⇒ 보건소
- 사업소 신설 :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
 - 가조면 대학동 보건진료소 ⇒ 가조면 도리 보건진료소
 - 주상면 거기1구 보건진료소 ⇒ 주상면 거기 보건진료소
 - 고제면 개명1구 보건진료소 ⇒ 고제면 개명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재조정

□ 개정근거

- 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 통보
(경상남도 행정12200-11810(2003.8.26))
-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계획(자치12200 ~ 100283, 2003. 9. 1)
-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자료 【보건65550-46(2003.4.1)】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군 본 청

제3조(부군수) ①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둔다.

②부군수는 다음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사무의 총괄
2.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3. 기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행정과·자치지원과·재무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농정과·경제과·환경녹지과·건설과 및 지역개발과를 둔다.

②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통제

- 나.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운영 총괄
- 다.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
- 라. 법제·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종합민원실장

- 가. 민원업무의 총괄 관리
- 나. 지적공부·건축물관리 대장 및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 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 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업무
- 마.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관련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 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관리
- 사.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 아.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

3. 행정과장

- 가.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 나. 직제·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 다. 선거 및 국민투표
- 라.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바. 공무원 보수지급 등 업무
- 사. 공무원 복무관리
- 아. 자료관 설치 및 운영
- 자. 행정정보화 추진
- 차. 군민정보화 교육
- 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사항
- 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치지원과장

- 가. 읍·면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 나.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민방위에 관한 사항
- 라. 생활현장 민원처리

5. 재무과장

-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 나.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총괄

6. 사회복지과장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에 관한 사항

나. 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다.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관광과장

가. 공보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다. 관광 및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진흥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농정과장

가.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다. 식량작물 생산 및 기반조성

라.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

마. 지역산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바. 축산업 육성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사. 친환경 농산물 생산

9. 경제과장

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나. 중소기업 및 노동에 관한 사항

다. 광공업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라.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마. 미래산업에 관한 사항

10. 환경녹지과장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다. 공해배출업 시설허가 및 지도·점검

라. 산림종합계획 및 생활주변녹화 계획의 수립·시행

마. 산림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바.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사.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과장

- 가. 군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 나. 재해·재난 종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라.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과장

- 가. 국토의 이용 및 군 기본·관리계획수립·추진
- 나. 건축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다. 군 발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 라. 골프장 개발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 한센병, 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③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어촌등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 2 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59-19번지에 둔다.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 조정
2.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개선사업 지도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양축기술 및 영농기계화, 환경농업기술 지도
7.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 개선지도
9. 학습단체 육성 및 훈련
10.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사 업 소

제12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 ①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등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제14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 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상수도특별회계 관리
3.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징수
4.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의 관리
5.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재정비
6.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7.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하수처리의 수질검사 관리
8. 먹는물 관리
9. 상수도 취수 및 급수통제
10. 건설공사 품질실험실 운영
11.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기업 회계 운영 관리
13. 기타 상·하수도사업 등 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문화센터

제16조(설치) 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는(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등)등 지역 사회의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제17조(소장) 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 2 . 군민의 정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 3 . 각종 학술 세미나, 교육, 행사유치
- 4 . 저소득 세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
- 5 . 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 건전가정 육성사업
- 6 . 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 운영 및 사회교육
- 7 . 각종회의, 행사, 여가선용시설 제공
- 8 . 향토 문화재의 수집·보존과 공개관람
- 9 .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운영
10. 기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절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제19조(설치)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예회복과 국민화합 민주화 위령사업, 묘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 묘역관리 및 운영
- 2 . 명예회복 및 유족회 지원
- 3 . 방문객 안내 및 대외 홍보
- 4 . 전시 자료 수집 및 관리
- 5 . 위령제 및 추모식 운영 및 지원
- 6 .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 7 . 문화행사 기획 운영
- 8 . 홍보 영상물 제작
- 9 . 역사교육관, 위패봉안소 관리
10. 묘역 조경 및 주변 임야 관리
11. 조경,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2. 기타 거창사건 관련 사항

제4절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

제22조(설치) ① 수송대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수송

대관광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제23조(소장)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송대관광지 관리 및 운영
2. 주변 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 관리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4. 위천천 상류지역 수질오염 방지
5. 기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읍·면

제25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행정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문화센터”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수도사업소 다음에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추가한다.
- ②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도시환경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 ③ 거창군아름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7조 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④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6조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중 “도시환경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 ⑥ 거창군민상조례
제1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⑦ 거창군공인조례
제6조 제1항, 동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8조, 제11조 내지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⑧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 ⑨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⑩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⑪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산림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하며, “도시환경과장”
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 ⑫ 거창군건축조례
제9조 제2항 중 “도시환경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 ⑬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별표1 소관별 항목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며, “자
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산림과”를 “환경녹지
과”로, “도시환경과”를 “지역개발과”로 하며, “수도사업소”를 “상·하수
도사업소”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제4호의 “자치지원과 및 자치지원과장”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1	거창군 일원
주상면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	주상면 일원
웅양면보건지소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217-11	웅양면 일원
고제면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200-1	고제면 일원
북상면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3	북상면 일원
위천면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03-3	위천면 일원
마리면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	마리면 일원
남상면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4	남상면 일원
신원면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87-5	신원면 일원
가조면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42-8	가조면 일원
가북면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877-3	가북면 일원
거기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10	거기1·2·3구, 남산1·2·3구
강천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18-2	산포,우량,석정,강천,금광,어인, 용전,군암
아주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292-11	송산,아주,한기,신촌,왕암,오산,장지
구송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71	답선,원기,원봉계,와룡,용초,구송.둔기
개명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621-1	개명1·2구,수내,손항,온곡
소정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39-6	중산,소정,개삼
월성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8	산수,월성,내계,황점
모전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3	모전,석동,원당,무월,당산
고학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30-5	병향,고신,고대,상촌
울리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울리 176-1	풍계,상울
임불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83-1	임불,남불,월포, 전척,고척
진목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155	춘전,진목,남진, 동령,신기,둔동
지산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6-4	자하,신기,장전,천동,대사
대현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70	내외탐,소야,대현,비곡
양지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2-1	원동,양지,수옥,저전,감약,구사,신기, 수다
도리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도리 1221	대학동,화곡,도산당,녹동, 부산
내촌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97-3	몽석,내촌,송정,용암,개금
중촌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72-1	심방,회남,중촌,추동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
거창군문화센터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16-5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
거창군수송대관광지관리사업소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50-3